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체육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발의 사유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명시 하므로써 2004.3.12 개정된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저촉을
사전에방하여 끊임없이 우리구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4조 제2항에서 별표1을 신설하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과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하였으며

- 안 제5조 제3호와 안 제6조 제1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종목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하면서 종전 별표1을 삭제하여 포괄적 범위의 교실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교실의 운영은 수혜자부담 원칙에서 무료 원칙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김영진 의원외 16분 의원께서 2004. 12. 9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2004. 3. 12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금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 세시풍속 활동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 김영진 의원외 16분 의원께서 개정안 발의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초 문화체육과를 경유하여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시에는 조례에 근거 규정만 있으면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금년초에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재협의한 결과 기부행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밀히 정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어 각종 문화·체육예술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에따라 진흥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범위를 별표1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민에 대한 교육과목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범위로 확대하여 법적근거의 명확화와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구민의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무료를 원칙으로 생활체육·건전여가교실을 운용토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별표1의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공연행사, 세시풍속에 있어 경품을 참여인원의 3% 이내 제공가능토록 하였으나, 참여인원의 불확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경품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경품의 한도액을 총 행사비의 10%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별표1의 공연행사의 경우는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전시행사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세시풍속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정하여 참가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별표1의 문화행사 참가의 경우는 “영등포문화원, 영등포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대상자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별표2의 건전여가교실 과목의 경우는 “풍물놀이”, “시조강습” 과목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2005. 3. 7

보고자 : 김찬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